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19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김용만・이인영・강준현

박상혁 • 천하람 • 조승래

이정문 · 염태영 · 천준호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 신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를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경고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 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 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해당 기 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경고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 ② |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 包	~岂

<신 설>

③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 직후보자가 제16조제3항을 위 반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